

인천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가단236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유병일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891,673원 및 그중 18,891,547원에 대하여 2022. 3. 31.부터 2022. 6. 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1. 9. 23. 접수 제43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사 고범진

별지